

 <p><b>거창군</b> Geochang County</p> <p>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p>	<p><b>공 보</b></p> <p>제798호 2021. 4. 7.(수)</p>	
---	---	---

선 결	기관의 장
--------	-------

**훈 령**

제448호 거창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 3

**고 시**

제2021-59호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2-286, 287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 취소 고시 ..... 6

제2021-61호 도로명주소 고시 ..... 9

**공 고**

제2021-532호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 소로2-286, 소로2-287호선) 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 11

제2021-534호 거창군계획시설(경남도립거창대학)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 15



거창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거 창 군 수

서 명 생 략

2021년 4월 7일

거창군 훈령 제448호

## 거창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거창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충족”을 “모두 충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등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나 의견표명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5조(적극행정 면책요건) ① 이 규정에 따라 적극행정 과정에서 공무원 등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u>충족</u>한 경우에는 면책처리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 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li> <li>2.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li> <li>3.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li> </ol> <p>② 제1항제3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li> <li>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을 것</li> </ol>	<p>제5조(적극행정 면책요건) ① 이 규정에 따라 적극행정 과정에서 공무원 등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u>모두 충족</u>한 경우에는 면책처리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 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li> <li>2.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li> <li>3.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li> </ol> <p>② 제1항제3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li> <li>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을 것</li> </ol> <p><u>&lt;신 설&gt;</u>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등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나 의견표명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p>

# 거창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계획

## 1. 제안이유

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거창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의 적극행정 면책조항을 추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적극행정 면책규정 신설(안 제5조제3항)

경상남도 민원조사기획과-2539호(2020.7.9.)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나 의견표명을 이행한 행정 조치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면책한다는 조항 신설

### 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내용 반영(안 제5조제1항)

(현행)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거창군 고시 제2021-59호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2-286, 287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 취소 고시

거창군 고시 제2021-43(2021.03.18.)호로 실시계획 고시된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 소로2-286, 287호선)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인가 취소 요청이 접수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4항,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인가 취소 고시합니다.

2021. 04. 01.

거 창 군 수

1. 취소사업지 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2038번지 일원

2. 취소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군계획시설(도로)사업
- 명 칭 : 빼재 산림레포츠파크 진입도로 개설공사

3. 취소사업의 개요

종류	명 칭	위 치		시 행 규 모						시 행 구 간	최 초 결정일	사업기간
		읍면	리	구분	류별	번호	연장(m)	폭(m)	면적(m <sup>2</sup> )			
군 계 획 시 설	빼재 산림레포츠 파크 진입도로 개설공사	고제	개명	소로	2	286	346	9.5~11	10,552	고제면 개명리 2026-1번지 ~ 2070번지 고제면 개명리 산19-17번지 ~ 2040-1번지	거창군고시 제2017-105호 (2017.8.24.)	2021.03.18. ~ 2022.12.31.
						2	287	225	9,841			

4. 취소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거창군수(산림과장)
- 주 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5. 취소사유: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

6. 취소 대상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소로 2-286호선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	-	-	32,152	10,552					
1	고제면 개명리	2024-3	도	4,157	135		국(건설부)			
2	고제면 개명리	2026-4	전	1,741	1,741		거창군			
3	고제면 개명리	산19-34	임	2,034	2,034		거창군			
4	고제면 개명리	2082-2	전	58	58		거창군			
5	고제면 개명리	산19-33	임	887	887		거창군			
6	고제면 개명리	2270	도	3,160	194		국(건설부)			
7	고제면 개명리	2063-3	전	2,000	2,000		거창군			
8	고제면 개명리	산20-11	임	1,362	1,362		거창군			
9	고제면 개명리	2073-4	전	433	338		거창군			
10	고제면 개명리	2073-6	전	121	64		거창군			
11	고제면 개명리	2074	전	357	134		거창군			
12	고제면 개명리	산20-13	임	534	534		거창군			
13	고제면 개명리	2072	임	393	195		거창군			
14	고제면 개명리	2268	구	14,344	305		국(농수산부)			
15	고제면 개명리	2046-9	전	72	72		거창군			
16	고제면 개명리	2071	답	261	261		거창군			
17	고제면 개명리	2070	대	238	238		거창군			

○ 소로 2-287호선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	-	-	28,443	9,841					
1	고제면 개명리	2038	전	1,050	1,050		거창군			
2	고제면 개명리	2040-1	도	947	352		국(건설부)			
3	고제면 개명리	2039-1	도	7	7		국(건설부)			
4	고제면 개명리	산19-14	도	13,316	2,681		국(건설부)			
5	고제면 개명리	산19-38	임	1,576	1,576	경남 함양군 안의면 매바위길 *	이*원			
6	고제면 개명리	산19-39	임	73	73	경남 함양군 안의면 매바위길 *	이*원			
7	고제면 개명리	2037-1	전	131	131	경남 함양군 안의면 매바위길 *	이*원			
8	고제면 개명리	2037-4	전	339	339	경남 함양군 안의면 매바위길 *	이*원			
9	고제면 개명리	산19-36	임	2,985	2,985		거창군			
10	고제면 개명리	2269	도	512	30		국(건설부)			
11	고제면 개명리	2027	도	1,531	153		국(건설부)			
12	고제면 개명리	산19-17	도	1,487	341		국(건설부)			
13	고제면 개명리	2031-5	임	25	25		거창군			
14	고제면 개명리	2031-6	과	10	10		거창군			
15	고제면 개명리	2030-11	전	29	7		거창군			
16	고제면 개명리	2030-7	도	17	10		국(국토해양부)			
17	고제면 개명리	2030-8	도	251	6		국(국토해양부)			
18	고제면 개명리	2024-3	도	4,157	65		국(건설부)			

7. 관계도서는 거창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였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055-940-35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4. 7.

거창군수

- 부여한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4길 145 등 3건
- 폐지한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4길 145-3 등 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8조,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 제7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055-940-3313)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 도로명주소(부여.변경.폐지) 고시 조서

일련 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 시 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도로명	도로명주소		
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28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4길 145	20210407	20090401	거열로의 시작점에서 부터 네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 번호 부여
2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농산리 462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원농산길 153-10	20210407	20090401	400여 년 전에 창녕 성씨가 마을을 열었다고 하는 원농산이라는 자연마을 이름 반영	건물 번호 부여
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 산359-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장팔3길 129-7	20210407	20090401	장팔길의 시작점으로 부터 분기되는 세번째 도로	건물 번호 부여
4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397-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4길 145-3	20210407	20090401	거열로의 시작점에서 부터 네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 번호 폐지( 건축 물 철거)
5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396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4길 145-8	20210407	20090401	거열로의 시작점에서 부터 네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 번호 폐지( 건축 물 철거)

#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 : 소로2-286, 소로2-287호선) 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 : 소로2-286, 소로2-287호선)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아래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9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
-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2021. 04. 02.

## 거 창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2038번지 일원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거창군수(산림과장)
- 주 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우편번호 50132)

3. 사업개요

종류	명 칭	위 치		시 행 규 모						시 행 구 간		최 초 결정일	비 고
		읍·면	리	구분	류별	번호	연장(m)	폭(m)	면적(m <sup>2</sup> )	기점	종점		
교통시설	(소로2-286, 287호선) 배재 산림레포츠파크 진입도로 개설공사	고제	개명	소로	2	286	346	9.5~11	10,552	고제면 개명리 2026-1	고제면 개명리 2070	거창군고시 제2017-105호 (2017.8.24.)	
						287	225	9.5~11	9,841	고제면 개명리 산19-17	고제면 개명리 2040-1		

#### 4.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 열람장소 : 거창군청 산림과(☎055-940-8893)

5.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2022.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소로 2-286호선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합계				32,152	10,552			
1	고제면 개명리	2024-3	도	4,157	135		국(건설부)	
2	고제면 개명리	2026-4	전	1,741	1,741		거창군	
3	고제면 개명리	산19-34	임	2,034	2,034		거창군	
4	고제면 개명리	2082-2	전	58	58		거창군	
5	고제면 개명리	산19-33	임	887	887		거창군	
6	고제면 개명리	2270	도	3,160	194		국(건설부)	
7	고제면 개명리	2063-3	전	2,000	2,000		거창군	
8	고제면 개명리	산20-11	임	1,362	1,362		거창군	
9	고제면 개명리	2073-4	전	433	338		거창군	
10	고제면 개명리	2073-6	전	121	64		거창군	
11	고제면 개명리	2074	전	357	134		거창군	
12	고제면 개명리	산20-13	임	534	534		거창군	
13	고제면 개명리	2072	임	393	195		거창군	
14	고제면 개명리	2268	구	14,344	305		국(농수산부)	
15	고제면 개명리	2046-9	전	72	72		거창군	
16	고제면 개명리	2071	답	261	261		거창군	
17	고제면 개명리	2070	대	238	238		거창군	

○ 소로 2-287호선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합계				28,443	9,841			
1	고제면 개명리	2038	전	1,050	1,050		거창군	
2	고제면 개명리	2040-1	도	947	352		국(건설부)	
3	고제면 개명리	2039-1	도	7	7		국(건설부)	
4	고제면 개명리	산19-14	도	13,316	2,681		국(건설부)	
5	고제면 개명리	산19-38	임	1,576	1,576	경남 함양군 안의면 매바위길 3	이규원	
6	고제면 개명리	산19-39	임	73	73	경남 함양군 안의면 매바위길 3	이규원	
7	고제면 개명리	2037-1	전	131	131	경남 함양군 안의면 매바위길 3	이규원	
8	고제면 개명리	2037-4	전	339	339	경남 함양군 안의면 매바위길 3	이규원	
9	고제면 개명리	산19-36	임	2,985	2,985		거창군	
10	고제면 개명리	2269	도	512	30		국(건설부)	
11	고제면 개명리	2027	도	1,531	153		국(건설부)	
12	고제면 개명리	산19-17	도	1,487	341		국(건설부)	
13	고제면 개명리	2031-5	임	25	25		거창군	
14	고제면 개명리	2031-6	과	10	10		거창군	
15	고제면 개명리	2030-11	전	29	7		거창군	
16	고제면 개명리	2030-7	도	17	10		국(국토해양부)	
17	고제면 개명리	2030-8	도	251	6		국(국토해양부)	
18	고제면 개명리	2024-3	도	4,157	65		국(건설부)	

## 7. 의견제출 및 열람

- 사업시행에 관한 세부내용 및 관계서류는 위 열람장소(거창군청 산림과)에 비치하고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주민에게 보이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장소 또는 우편, FAX, E-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서면제출 주소 및 연락처

- ▶ 우편번호/주소 : 50132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산림과
- ▶ FAX : 055-940-8893
- ▶ E-mail : gnldus03@korea.kr

## 의견서 (제출서식)

- 실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 
  -
- 성 명 :
- 연 락 처 :
- 기타 참고사항.

## 거창군계획시설(경남도립거창대학)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경상남도 고시 제1995-115(1995.05.30.)호로 최초 결정된 거창군계획시설(학교:경남도립거창대학)사업 실시계획 인가 신청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07.

### 거 창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1396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군계획시설사업(학교:경남도립거창대학)
- 명 칭 : 경남도립거창대학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3. 사업시행 규모 및 내용

가. 부지면적 : 98,604m<sup>2</sup>

나. 사업개요

종 류	위 치	사업규모(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고
		결정면적	금회시행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학교시설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1396일원	98,604	5,000	1,018.18	1,309.56	경고 제1995-115호 (1995.05.30.)	

다. 세부내용

구 분	도 면 시 번 호	건물명	건축면적 (㎡)	건축연면적 (㎡)	규 모 (지하/지상)	비 고	
교 기 시	육 본 설	1	제2공학관	1,132.97	3,330.73	1/3	
		2	제3공학관	697.68	1,897.2	0/3	
		3	제4공학관	647.2	1,215	0/2	
		4	제2실습동	108.8	108.8	0/1	
		5	본관동	1,417.34	5,512.09	1/4	
		6	제1공학관	1,711.86	7,190.1	1/4	
		7	제15동 건축실습실	88.4	88.4	0/1	
		8	제23동 자동차실습동	241.2	241.2	0/1	
		9	용접실습동	244.18	361.2	0/2	
		10	제26동 실습실및강의실	306.16	294.84	0/1	
		11	제1공학관(부1) (도자기가마실습실)	48	48	0/1	
소 계			<b>6,643.79</b>	<b>20,287.56</b>			
지 시	원 설	12	학생회관	443.15	942.71	0/3	
		13	창업보육센터	690.68	1,293.11	0/2	
		14	기숙사	909.84	3,762.93	1/4	
		15	수위실	33.21	33.21	0/1	금회 철거
		16	제16동 자재창고	85.36	85.36	0/1	
		17	국제어학센터	450.78	1,229.28	1/3	
		18	제27동 평생교육센터	1,137.44	2,985.41	0/2	
		19	기숙사(부2)	863.64	1,879.89	0/3	
		20	제23동 자동차실습동(부3)	137.4	137.4	0/1	
		21	국민체육센터	1,018.18	1,309.56	1/2	금회 증축
		소 계			4,751.5 <b>5,736.47</b>	12,349.3 <b>13,625.65</b>	
합계			11,395.29 <b>12,380.26</b>	32,636.86 <b>33,913.21</b>			

4. 사업 시행자

-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 성 명 : 경상남도(경남도립거창대학)



5.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2. 2. 28.
6. 열람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7. 열람장소 : 거창군청 도시건축과(☎055-940-3583)
8.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붙임참조
9. 의견제출 및 열람 : 사업시행에 관한 세부내용 및 관계서류는 위 열람 장소에 비치하고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주민에게 보이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내에 의견서를 열람 장소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서식)

- 실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 성 명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	-	-	54,086	5,000					
1	거창읍 김천리 164	164	학	54,086	5,000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상남도			

## 「거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거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 2. 개정이유

- 중앙부처 및 도 등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근무의욕 고취 및 처우개선을 위한 직급보조비 추가 지원 근거 마련

### 3.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현행) 「거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 (변경) 「거창군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 조례」

나. 직급보조비 추가지급 신설(안 제4조)

-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거창군 외의 지역에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월 300,000원의 직급보조비 추가지급

4. 예고기간 : 2021. 4. 2.(금) ~ 4. 22.(목)

#### 5. 의견제출

가.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다. 주소 : (우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행정과)

라. 전화 055-940-3193, 팩스 055-940-3169, 이메일 ker778@korea.kr

#### 6.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행정과 서무담당 【☎(055)940-319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거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거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거창군 규칙 제 호

## 거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를 “거창군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18조의6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직급보조비 추가지급)** 영 별표 14 비고 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월 300,000원을 말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직급보조비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거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 지급 조례</u></p> <p><u>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 style="text-align: right;"><u>&lt;신 설&gt;</u></p>	<p><u>거창군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 조례</u></p> <p><u>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18조의6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u>제4조(직급보조비 추가지급) 영 별표 14 비고 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월 300,000원을 말한다.</u></p>

## 관련법령

###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8. 25.] [대통령령 제30972호, 2020. 8. 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46조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보상 등(이하 "수당등"이라 한다)의 종류·지급범위·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조(특수업무수당)**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되, 해당 업무의 곤란성 및 난이도 등이 높은 경우에는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업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은 별표 9의 지급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제18조의6(직급보조비)**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14의 지급구분표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지급한다.

**제18조의7(실비보상 등의 지급방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 제20조제1항·제2항, 제21조 및 제24조의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액급식비·명절휴가비·연가보상비 또는 직급보조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수"는 "정액급식비·명절휴가비·연가보상비 또는 직급보조비"로 본다.

**제18조의8(가산징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부정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별표 14] <개정 2020. 3. 10.>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제18조의6 관련)

구분		월 지급액
모든 공무원(교육공무원 제외)	교육공무원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11항제1호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는 총장	1,240,000원
광역시·특별자치시·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서울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 서울특별시의 정무부시장		950,000원
	부총장	900,000원
부단체장이 2급(상당)인 시·군·구의 단체장, 1급(상당),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1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11항제2호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는 총장, 장학관·교육연구원(1급 상당 직위)	750,000원
부단체장이 3급(상당)인 시·군·구의 단체장, 2급(상당), 연구관·지도관(2급 상당 직위),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2호)	장학관·교육연구원(2급 상당 직위)	650,000원
부단체장이 4급(상당)인 시·군·구의 단체장, 3급(상당), 연구관·지도관(3급 상당 직위),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3호)	단과대학장, 장학관·교육연구원(3급 상당 직위)	500,000원
4급 부단체장		450,000원



4급(부단체장 제외, 상당), 연구관·지도관(4급 상당 직위),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4호), 일반임기제공무원(5급 상당)	학과장(학장보), 장학관·교육연구관(4급 상당 직위)	400,000원
5급(상당), 연구관·지도관(5급 상당 직위),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5호), 일반임기제공무원(6급 상당), 지방전문경력관 가군	전문대학 학과장, 장학관·교육연구관	250,000원
6급(상당), 연구사, 지도사(3호봉 이상),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제6호), 일반임기제공무원(7급 상당),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장학사·교육연구사	165,000원
7급(상당), 일반임기제공무원(8급 상당)		155,000원
8·9급(상당), 지도사(2호봉 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9급 상당), 지방전문경력관 다군		145,000원

비고

1. 연구직·지도직공무원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및 별표 2의2에 따라 지급한다.
2. 파견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추가 지급할 수 있다.
  - 가. 중앙행정기관에 파견된 공무원: 월 300,000원
  - 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공무원
    - 1) 4급·5급(상당직 포함) 공무원: 월 200,000원
    - 2) 6급 이하(상당직 포함) 공무원: 월 100,000원
  -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지급액의 범위에서 교류지원비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3.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300,000원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4. 전용승용차량을 제공받는 공무원과 제3조에 따른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직급보조비에서 아래 구분표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모든 공무원(교육공무원 제외)	교육공무원	감액 금액
1급(상당)부터 3급(상당)까지, 연구관·지도관(3급 상당 직위),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1호부터 3호까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1 1항제2호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는 총장과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처장·기획연 구실장·교양과정부 장, 장학관·교육연구관 (1·2·3급 상당 직위)	200,000원
4·5급(상당), 연구관·지도관(4·5급 상 당 직위),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 기제공무원(4·5호), 일반임기제공무원(5 급·6급 상당), 지방전문경력관 가군	위의 대상자를 제외한 대학 및 전문대학 교원, 장학관·교육연구관 (4·5급 상당 직위)	140,000원
6·7급(상당), 연구사·지도사,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6호), 일반임기제공무원(7급·8급 상당),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장학사·교육연구사, 그 밖의 교육공무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1 1항제1호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는 총장은 제외한다)	130,000원

5. 위 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제2항(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의 요청에 의해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4. 2.

### 거 창 군 수

- 1.공고명칭 :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 2.공고기간 : 2021.4.2.~ 2021.4.17.(15일간 )
- 3.대상차량 : 경남82다7404

순번	차량번호	차명	모델연도	운행정지사유	운행정지일자
1	경남82다7404	봉고프런티어 덤프	2003	기타	2021. 4 2

#### 4.내용

가.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규정에 의거 소유자의 요청에 의한 자동차 운행정지를 명하였으며, 해당 자동차는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나. 자동차사용자(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7의2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2조제2의2호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해당 자동차는 직권말소 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민원소통과(☎ 055-940-32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창군관리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안) 열람 공고

거창군관리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거창군 계획조례」의 제7조에 따라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4월 07일

# 거 창 군 수

### 1. 거창군관리계획(시설: 도로)결정(변경) 조서

#### 가. 교통시설

##### 1) 도로

#### ■ 도로 총괄표

구분	합계			1류			2류			3류			비고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1	67	757	1	67	757	-	-	-	-	-	-	
소로	1	67	757	1	67	757	-	-	-	-	-	-	

#### ■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소로	1	A	10	국지 도로	67	소로 1-32	거창읍 정장리 917-7	일반 도로	-	-	

#### ■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로1류 A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설</li> <li>B = 10m</li> <li>L = 67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거창군 행복주택사업의 원활한 진출입 위한 진입도로 신설</li> </ul>

2. 관계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
3. 열람기간 : 신문게재 익일부터 14일간
4. 의견제출 : 위의 거창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열람장소 :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055-940-35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거창군 공직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거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5일

거 창 군 수

###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 2. 개정이유

-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른 위원회 위원 확대 및 위원 자격 변경과 상위법령 중복 조항 삭제

### 3. 주요내용

가. 법 개정에 따른 위원회 위원 확대 및 위원 자격 변경(안 제2조)

- 1) 위원 총수 변경 : 5명 ⇒ 7명
- 2)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확대 : 3명 ⇒ 5명
- 3) 위원 자격 변경 : 법관 ⇒ 판사, 검사, 변호사

나. 상위법령 중복 조항 삭제(안 제3조, 제8조)

- 1) 위원회 기능 및 관할 : 「공직자윤리법」 제9조와 중복

2) 위원 수당 등 : 「거창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개별조례에 근거없이도 지급 가능

4. 예고기간 : 2021. 4. 5.(월) ~ 4. 26.(월)

####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4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기획예산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다. 주소 : (우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기획예산담당관)

라. 전화 055-940-3063, 팩스 055-940-3029, 이메일 juyeong81@korea.kr

#### 6.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 ☎(055)940-30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거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거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 거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구성)** ① 거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판사, 검사, 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5명
2. 거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과 군소속 4급이상 공무원 1명

제3조를 삭제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2조(구성)</b> ① 거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b>5인</b>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p> <p>1. <b>법관</b>,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b>자</b>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b>자</b> 중에서 <b>3인</b></p> <p>2. 거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b>군의원 1인</b>과 <b>군소속 4급이상 공무원 1인</b></p> <p>② (생략)</p> <p><b>제3조(기능 및 관할)</b>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p> <p>1. 「공직자윤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심사와 <b>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처리</b></p> <p>2.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승인</p> <p>3. 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승인</p> <p>4.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b>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b></p> <p>② <b>위원회의 관할은 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관할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b></p> <p><b>제8조(수당 등)</b>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거창군 위원회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b>제2조(구성)</b> ① 거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b>7명</b>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p> <p>1. <b>판사, 검사, 변호사</b>,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b>사람</b>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b>사람</b> 중에서 <b>5명</b></p> <p>2. 거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b>군의원 1명</b>과 <b>군소속 4급이상 공무원 1명</b></p> <p>② (현행과 같음)</p> <p><b>&lt;삭 제&gt;</b></p> <p><b>&lt;삭 제&gt;</b></p>

관련법령

## □ 「공직자윤리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에 각각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 7. 29.>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각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7. 29., 2015. 12. 29.>

1.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국회의원, 국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법관, 법원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3.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헌법재판소재판관,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5.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시·군·구의회의원, 시·군·구의 4급 공무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6.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시·군·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시·군·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7.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4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8.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공직자 외의 공직자와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2020. 12. 22.>

④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의 자격, 임기, 선임 및 심사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1. 7. 29., 2019. 12. 3.>

1.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국회규칙

2.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대법원규칙

3.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헌법재판소규칙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5.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대통령령

6.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 위원회와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1. 7. 29.>

⑥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법과 제4항 각 호에 규정된 규칙, 대통령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9.>

[전문개정 2009. 2. 3.] [시행일 : 2021. 6. 23.] 제9조

## □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2020.05.06 조례 제256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수당과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수당)** ①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대면회의에 한정한다)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지명된 위원이 자료수집 또는 안전검토 등 심사를 하여 이를 위원회에 보고(서면보고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나 거창군의회 의원인 위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적용하지 않는다.

**제5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한 경우에는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및 제8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63조 및 제77조의2,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및 같은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정기 검사 안내문, 부과지서, 자동차 검사명령서, 건설기계 정비명령서, 건설기계검사지시 최고 통지, 압류통지서 등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주소불명, 이사감,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검사유효기간 경과 차량은 빠른 시일 내에 가까운 자동차검사소 또는 지정 정비사업소에서 자동차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정기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 규정에 의거 최고 30만원의 과태료,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계속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번호판 영치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1항에 의거 직권말소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오니 빠른 시일 내에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 자동차·건설기계 검사안내 및 위반자 우편통지서 반송분 공시 송달
2. 공고기간 : 2021. 4. 5. ~ 2021. 4. 24.
3. 공고대상 : 64건(붙임내역 참조)
4. 문 의 처 : 거창군청 민원소통과 민원담당 (☎055-940-3293)

2021년 4월 5일

거 창 군 수